

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기획경제위원회 이민옥 의원

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,

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
성동구 제3선거구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이민옥 의원입니다.

오늘 여러 위원님에게 「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,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지난 3월 27일 폐지됨에 따라 소속 분과위원회인 풀뿌리경제특별위원회 관련 근거도 함께 폐지되었습니다.

이로 인해 「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」 내용 중 ‘소상공인 지원 시행 계획의 수립 및 시행’에 대해 풀뿌리경제특별위

원회가 자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종전의 규정은 수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

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그 필요성을 검토하여 별도의 자문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.

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·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!